

[마무리칼럼04] 화제, 개념을 서술하는 문장엔 잉여정보가 없다

첫 문단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문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강사들이 항상 강조하는 바이지만, 그 효과는 두루뭉실합니다.

저 또한 이렇게 배웠고 항상 이는 갈증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저는 올해 지문이 담는 화제의 특성에 따라 갖게 되는 필연적 논리들을 탐구하기 시작했고 이들을 통해 체계적인 지문 예측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예측법이 통하지 않는 지문은 왜 통하지 않는지도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 맛보기가 바로 주간케인07입니다. 주간케인의 대부분의 지문들에는 이 예측이 담겨있고요.

제 수업의 핵심 내용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소개되었습니다. (<https://orbi.kr/00031447089>)

오늘 소개할 내용은 화제와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는 문장들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어떻게 지문 독해의 유기성을 높이는가입니다. 첫문단을 통한 예측보다 훨씬 실전적이고 체화도 쉬울 겁니다. '평가원이 요구하는 만큼만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떤 말인지 설명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평가원은 잉여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꽤 익숙하게 들어본 말일 겁니다.

잉여정보라 함은 지문의 거시적인 흐름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이지 않음과 더불어 출제의 확률도 낮은 정보들을 말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사실 생각보다 꽤 자주 발견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다루지는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태도의 강력함을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지문.

1. 20.09.점유소유

점유소유 지문에서 이 태도를 제대로 체화했는가를 물어봅니다. 제대로 체화되지 않은 학생은 끝까지 애매 모호한 상태로 독해를 마칠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의 경우, 평가원이 우리에게 원하는 정도까지의 이해가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단부터 느낌이 세했죠. 애초에 [A]로 묶이며 문제 하나로 할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 | |
|--|---|
| <p>[A]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p> | <p>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p> |
|--|---|

지문의 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는 문장엔 잉여정보가 없다

직접점유를 설명하는 문장을 봅시다.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구분하였죠? 여러분은 어디에 주목하실 건가요? 대부분 빨간색이겠죠. 그래서 이후의 독해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다시, 지문의 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는 문장엔 잉여정보가 없습니다.

직접점유는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 여기서 의문은 '무엇이 물리적인가?'

왜 해당 문장에서 물리적으로 물건을 지배하는 상태의 예시를 들었겠어요? 이 물음들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한 거예요. 물론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은 이들 말고도 다양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왜 평가원이 예시를 이 두 개만 들었을까요?

이 상황을 후술할 거니까!

[A]의 역할은 점유 소유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법 지문이므로 '점유'와 '소유'라는 법 개념이 현실 상황에 적용되겠죠. 그 상황이 바로 직접점유를 설명하는 문장에서 들었던 두 예시입니다.

해당 문장에서 특정된 두 개의 예시를 든 두 번째 이유는 간접점유의 설명을 돕기 위함입니다. 간접점유는 물건을 빌려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상태입니다. 직접점유와 쌍을 이루는 개념임을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질문, 직접점유자가 있으면 항상 간접점유자가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앞서 물리적으로 물건을 지배하는 상황은 제시된 두 상황 외에도 다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 중 가장 일반적인 상태는 물건의 주인이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겠죠.

직접점유에 제시된 예시에 주목하여 간접점유와 직접점유가 서로 쌍을 이루는 개념임을 파악하고, 간접점유자의 존재가 필연적인지에 대한 물음을 하였다면, 직접점유의 상황이 세 가지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1. 물건의 주인이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
2. 빌려쓰는 상황
3. 보관하는 상황

이 사고들이 어디에서 또 효과를 발휘할까요?
아래 문단을 봅시다.

| | |
|--|---|
| <p>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이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p> | <p>'점유개정'의 예시로 A가 B에게 물건을 빌려쓰는 상황을 제시합니다.</p> <p>따라서 A는 직접점유 상태입니다.</p> <hr/> <p>'반환청구권 양도'의 예시로 D에게 가방을 맡겨 두는 상황을 제시합니다.</p> <p>따라서 D는 직접점유 상태입니다.</p> |
|--|---|

물론 본 지문을 다 맞으신 학생들, 좀 더 좁게 보면 해당 문단의 이해를 성공하신 분들은 위와 같은 사고가 났을 겁니다. 그러나, 직접점유를 설명하는 문장에서 제시된 예시들이 그대로 쓰일 것임을 알고 접근하는 학생과, 직접점유가 물리적 지배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만 챙기고 본 문단을 읽은 학생들의 이해 속도의 차이는 매우 큼니다.

두 번째 문단이 [A]로 묶인 이유는 해당 내용을 따로 한 문제에 할당하여 물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 | |
|--|---|
| <p>28.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p> <p>① 물리적 지배를 해야 동산의 간접점유자가 될 수 있다. ② 간접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 ③ 하나의 동산에 직접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점유자도 있어야 한다. ④ 피아노의 직접점유자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간접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⑤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점유나 간접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p> | <p>① 문제 될 게 없죠? ② 첫 문단의 내용이 필요하긴 하나, 너무 간단히 처리 가능합니다. ③ 아니죠. 두 번째 이유 ④ 첫 문단의 내용이 필요하긴 하나, 너무 간단히 처리 가능합니다. ⑤ 세 번째 문단의 화제를 간단히나마 이해했으면 처리 가능합니다.</p> |
|--|---|

②, ④, ⑤번 선지는 주목할 만 합니다. 19.11.31이 지문의 [A]내에 있는 정보만을 물어보았다고 해서 본 지문에 똑같은 논리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다른 문단에서의 정보도 엮어서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0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며 항상 머리에 새긴 점은, 21학년도/22학년도 수능의 컨셉이 20학년도 평가원 시험지에 담길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경각심을 가지며 새로운 유형의 지문 세트에 익숙해지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0학년도 평가원 시험과 21학년도 평가원 시험을 비교해 본 결과, 제 예상은 옳았습니다. 앞서 점유소유에서 우리가 짚어본 점들은 그대로 21학년도 평가원 시험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 21.06.영상안정화기술

다시,
지문의 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는
문장엔 잉여정보가 없다

특히, 첫 문단은 이 태도를 적용하는 데 더욱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아래의 문단을 봅시다. 영상안정화기술 지문의 첫 문단입니다.

| | |
|--|---|
| <p>일반 사용자가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면 손의 미세한 떨림으로 인해 영상이 번져 흐려지고, 걸거나 뛰면서 촬영하면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영상이 흔들리게 된다. 흔들림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영상 안정화 기술이다.</p> | <p>손의 미세한 떨림으로 인해 영상이 번져 흐려지고 걸거나 뛰면서 촬영하면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영상이 흔들리게 된다.</p> |
|--|---|

일반 사용자가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상황을 제시합니다. 만약에 이 제시한 상황이 잉여정보라면, 왜 굳이 그렇게 자세히 서술했을까요? 저라면 사용자의 움직임으로 인해 영상이 흔들린다고만 적었을 것 같습니다. 왜 굳이 두 가지 상황을 제시했고, 각각의 상황에서의 서로 다른 인과관계를 상세히 서술했을까요? 또, 이 두 상황은 이항대립으로 정리가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첫 번째 상황은 약한 흔들림, 두 번째 상황은 강한 흔들림이네요.(정도의 연속적 이항대립)

각각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해결책(기술)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영상 안정화 기술에는 빛을 이용하는 광학적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디지털 기술 등이 있다. 광학 영상 안정화(OIS) 기술을 사용하는 카메라 모듈은 렌즈 모듈, 이미지 센서, 자이로 센서, 제어 장치, 렌즈를 움직이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렌즈 모듈은 보정용 렌즈들을 포함한 여러 개의 렌즈들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이미지 센서에 닿아 피사체의 상이 맺히고, 피사체의 한 점에 해당하는 위치인 화소마다 빛의 세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전기 신호가 저장 매체에 영상으로 저장된다. 그런데 카메라가 흔들리면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가 변한다. 이때 OIS 기술이 작동되면 자이로 센서가 카메라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방향과 속도를 제어 장치에 전달한다. 제어 장치가 렌즈를 이동시키면 피사체의 상이 유지되면서 영상이 안정된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영상 안정화 기술의 첫 번째로, OIS를 소개해주네요.

이것만 보고서는 OIS가 손떨림으로 인한 흔들림 보정 담당인지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를 건전하게 추론하는 방법이 있지만, 본 글의 주제와는 부합하지 않아 생략합니다.

OIS 기술이 손 떨림을 훌륭하게 보정해 줄 수는 있지만 렌즈의 이동 범위에 한계가 있어 보정할 수 있는 움직임의 폭이 좁다. 디지털 영상 안정화(DIS) 기술은 촬영 후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흔들림을 보정하는 기술로 역동적인 상황에서 촬영한 동영상에 적용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기술은 촬영된 동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나눈 후 연속된 프레임 간 피사체의 움직임을 추정한다. 움직임을 추정하는 한 방법은 특징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특징점으로는 피사체의 모서리처럼 주위와 밝기가 뚜렷이 구별되며 영상이 이동하거나 회전해도 그 밝기 차이가 유지되는 부분이 선택된다.

DIS를 소개하는 4번째 문단입니다. 첫 문단에서 손떨림을 언급하네요. 이동 범위에 한계가 있어 더 심한 흔들림에선 보정이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본 글에서 제시하는 태도는 지문의 유기성을 느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문 두 개로는 부족한가요?

아래 지문 봅시다.

3. 21.09.행정입법

제가 생각하는 21학년도 트렌드 중 하나는 짧은 지문 내의 높은 정보 밀도입니다. 그럴수록 그 어떤 정보도 흘러넘어선 안됩니다.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 나오면 최대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넘기면 필히 득해에 실패할 겁니다.

국가,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드론과 관련된 행정 규제 사항들처럼,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하거나, 개별적 상황을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행정 규제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 기관은 국회에 비해 이러한 사항들을 다루기에 적합하다.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을 위임명령이라고 한다. 위임명령은 제정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누어진다. 이들은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이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임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기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된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된다. 위임된 행정 규제 사항의 대상을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 규제 사항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 근거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넓어진다. 한편,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위임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행정규칙은 원래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입법으로서 고시(告示), 예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고 위임명령 제정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하여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위임된 사항이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커서 위임명령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이 행정입법의 제정 주체만 지정하고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위임된 사항이 고시나 예규로 제정될 수 있다. 이런 경우의 행정규칙은 위임명령과 달리, 입법예고, 공포 등을 거치지 않고 제정된다.

조례는 지방 의회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정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적용된다. 제정 주체가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인 지방 의회라는 점에서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위임명령, 행정규칙과 구별된다. 조례도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야 한다. 또한 법률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지만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 조례는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

앞 페이지들에서 자세히 설명 드렸으니 본 지문부터는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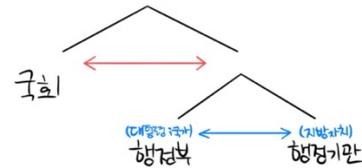
빨간색

행정부와 행정기관은 국회와 대립되고 행정부와 행정기관은 대통령을 수반하는가 아닌가로 나뉩니다. 대통령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시로 지방 자치 단체를 제시하는데, 이는 앞으로 지방 자치 단체를 재진술 할 것임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의 재진술은 17.11.반추위와 21.06.과거제 등에도 존재합니다.)

행정부 : 위임명령, 행정규칙

행정기관(지방 의회) : 조례



파란색

행정입법이 필요한 행정 규제 사항들의 종류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첨단기술' '상황 변화 즉각 대처' '개별적 상황 반영'

첨단기술 : 위임명령, 행정규칙

상황 변화 즉각 대처 : 행정 규칙

→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정됨

개별적 상황 반영 : 조례

→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당연히, 올해 수능은 예비평가의 일부 기조를 따를 것입니다.
 예비평가 지문에서 또한 위와 같은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 22.예비.동일론과이원론

정말 힘든 지문입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매우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특별한 걸 요구하는 건 하나도 없지만, 기출에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태도들(이해의 대상 명확히 구분, 이항대립, 재진술 등...)의 깊은 체화를 요구합니다. 이 경향은 올해 평가원 지문들에서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문제도 그냥 주는 게 없는 이 지문 세트에서, 우린 어휘 문제 : 20번을 같이 볼 겁니다. 최근 기출까지만 하더라도 어휘 문제는 그냥 주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본 지문에선 학생들이 매우 헛갈리게 출제되었습니다.

| 첫 번째 문단 | 세 번째 문단 |
|--|--|
| <p>인간은 이 세상에서 정신과 물질을 동시에 지닌 유일한 존재로 여겨진다. 정신은 과연 물질, 곧 육체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일까? ㉠ 컴퓨터와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 없는가? 오래전부터 정신을 비물리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았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육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학적 조성을 띠지만 정신은 비물리적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이원론이다. 이에 견줘 동일론은 정신은 육체, 그중에서 두뇌의 물리적 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존재하지, 육체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무엇인가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보며 “여기도 없군. 저기도 없네.” 하며 철저히 점검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면 된다. 그런 식으로 동일론은 이원론을 반박한다.</p> | <p>대표적 이원론자인 데카르트는 그런 특성으로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제시한다. 그는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가 사람처럼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을 해낼 수는 없으리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그 힘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다. 먼저 컴퓨터 언어라는 개념은 이제 상식적인 것이 되었다. 컴퓨터 언어는 인간이 쓰는 언어에 비해서 구조와 내용의 면에서 단순하지만 그 차이라 하는 것은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이다. 한편 데카르트의 저술이 나타난 이래로 수세기 동안 여러 학자들은 수학적 추론의 일반적 원리들을 이력저력 찾아낼 수 있게 되었고, 컴퓨터 기술자들은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데카르트를 깜짝 놀라게 했을 법한 ㉡ 기계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하지 않고서도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와 같이 더 복잡한 것을 끌어들이지 않고 무언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단순성의 원리’에 의해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p> |

20.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원자나 엑스선과 유사한 특성이 있다고
- ② ㉡ :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를
- ③ ㉢ : 화학적인 조성을 띠어야
- ④ ㉣ : 똑같은 특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 ⑤ ㉤ : 독립적인 존재인

답은 3번. 학생들은 2번에서 헛갈린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태도만 제대로 체화했어도 상당수의 경우 헛갈릴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의 경향 몇 가지 중 중요한 포인트들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1. 짧은 지문 내의 높은 정보 밀도
2. 평가원 기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본적인 태도들의 매우 깊은 체화

사실 오늘 제가 소개한 태도는 재진술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깊게 체화됐을 때 할 수 있는 발상들이었습니다. 본질에 부합한 태도였다고요. 2번의 맥락과 일치합니다. 올해 기출 경향이 1번은 거의 확실시 된 것 같기에, 오늘 제안 드린 태도는 최근 기출들에 적용해 보며 꼭 짚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간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은 체화도 생각보다 금방 될 거예요.

올해 수능에서 뭔가 하나 더 챙겨가고 싶다면, 꼭 이 태도를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예외에 대해서**

물론, 모든 정보가 다 쓰이지 않습니다. 진짜 잉여정보도 있습니다. 당장 점유소유 지문의 첫 문단에서 소유가 '사용·수익·처분'한다고 설명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재진술 되지 않습니다. 행정입법 지문에서의 '드론'은 완전한 잉여정보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로 인해 얻는 실보다 득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잉여정보로 밝혀지면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면 되십시오. 진짜 잉여정보의 경우 그 존재 이유를 따져보았을 때 지문의 흐름 구성에 기여하는지, 문단 내 세부 정보의 완결성에 기여하는지를 생각해보시면 판단이 쉬울 겁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 정도만 설명해 놓아도 직관적으로 잘 받아들이리라 생각합니다.

(‘사용·수익·처분’의 경우엔 밑줄 친 부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17.06.인공신경망 지문의 ‘기억·학습·판단’과 같은 경우입니다. 다음에 이를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스스로 비교해보며 정리해보세요!)

